

## 제1절 제1공화국

좌·우익 간의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운동 속에서 반탁운동이 결국 승리하여 유엔의 결의에 따라 남북한을 통한 동시선거가 예정되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하여 유엔한국통일단의 입북 거부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27일, 유엔소총회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고 미군정은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제헌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당국이 선거의 준비와 집행을 담당하였으며, 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선거법은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의하여 기초가 제정되었다. 이때 국회의원선거법은 1947년 9월 3일에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선거법’을 골자로 제정된 것으로 자국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175호로 공포된 전문 57조로 된 위 선거법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로서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일본제국의회에 의원이 되었던 자를 제외하고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 없이 가진다」[제1조, 제2조]라고 규정하여 평등 선거권을 규정하였다.

피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로서 선거권이 없는 자, 1년 이상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정치범은 제외], 일본 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현병보 또는 고등 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원이 되었던 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 7등 이상을 받은 자[단,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함으로써[제1조, 제3조] 정신능력이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일부 피선거권의 제한을 가한 외는 참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선거구는 「선거구마다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였고, 선거구의 획정은 부·군 및 구를 단위로 하여 인구 15만 미만은 1개 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 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 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 구로 하되 동법 부표 제1호에 의하여 총 200개의 선거구를 획정하여 법정 선거구획정주의에 의하였으며, 투표구는 읍·면 또는 동[부·시의 구]을 단위로 하여 인구 2,000인 이하로써 획정토록 하였다[제12조].

5·10 선거는 남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투표로 초대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제헌국회는 2년의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대다수는 무소속이었으나 정당으로서는

한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 등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본 총선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승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이와 같은 제도 아래에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의 제헌국회의원선거에는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 진영 지도자들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총 유권자 수 8,132,517인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자진 등록한 자가 유권자의 96.4%에 해당하는 7,840,871인이었으며, 전 등록자의 95.5%에 해당하는 7,487,649인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총 투표자의 96.4%에 해당하는 7,216,942표가 유효표로서 무효표는 총 투표자의 3.6%에 해당하는 270,707표에 불과하였다[다만 제주도는 치안 관계로 선거를 연기하여 1949년 5월 10일에 실시하였으나 편의상 통계는 이를 합하여 계산하였음]. 사상 초유의 보통선거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해방 이후 건국을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 의식과 기대감을 반영함과 동시에 주권재민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5·10 선거의 전국적 통계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제헌국회의원선거 전국·강원 투표 상황

구분	인구수 (1946. 8. 30.)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 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9,190,877	7,840,871	7,216,942	270,707	7,847,649	353,222	95.5	96.4
강원	1,116,836	467,554	451,194	7,844	459,038	8,516	98.2	98.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이 선거 당시 울진이 속한 강원도의 강릉군이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이외에 군별 1명씩, 모두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울진군에서는 총 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다.

<표 2> 제헌의원선거의 정당 단체별 상황

정당 단체별	입후보자 수	비율(%)	당선자 수	당선 비율(%)	득표 수	득표 비율(%)
무소속	417	44.0	85	42.5	2,745,483	40.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235	24.9	55	27.5	1,775,543	26.1
한국민주당	91	9.6	29	14.5	916,322	13.5
대동청년단	87	9.2	12	6.0	665,653	9.6
조선민족청년단	20	2.1	6	3.0	151,043	2.2

정당 단체별	입후보자 수	비율(%)	당선자 수	당선 비율(%)	득표 수	득표 비율(%)
대한로동총연맹	12	1.3	1	0.5	106,629	1.6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	10	1.1	2	1.0	52,512	0.8
기타 10명 미만 정당 단체(42개 단체)	74	7.8	10	5.0	401,554	5.9
총계	948	100	200	100	6,804,739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울진군에서의 5.10 선거의 후보자와 결과에 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제헌의원선거 울진군 상황

무소속정당명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무소속	김광준 (金光俊)	33	서울특별시	변호사	대출	일본고문합격, 경찰서장	11,224	당선
대한 독립 촉성국민회	김수근 (金壽根)	58	울진군 은정면 소태리	약종상	한수	도평의원, 군수, 약종상	9,491	
대동청년단	장홍구 (張洪九)	36	울진군 울진면 읍내리	양조업	전문졸	금융조합서기, 방위장교	6,120	
대한 독립 촉성국민회	전영직 (田永稷)	60	울진군 울진면 죽변리	농업	한수	민족운동	10,76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헌의원으로 울진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광준 의원은 헌법기초위원회으로 활약하면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안’, ‘사면법안’, ‘반민족행위처벌법안’ 등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동의안으로 ‘반민족행위특별검찰관사직원각하의 건’을 제출하였다. 총선 열흘 뒤인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제헌국회는 초대국회의장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소속의 이승만, 부의장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소속의 신익희, 한국민주당 소속의 김동원을 각각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제헌국회의 6월 1일 소집된 제1차 국회 본회의 결의로 6월 3일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에 걸쳐 초안을 토의·결정하였다.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회는 당초, 국회는 양원제, 정부 형태를 내각책임제로 하며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하였다. 또한, 권승렬의 안을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기초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대통령중심제로 하려는 이승만의 의도에 따라 단원제 국회, 대통령중심제로 통치구조가 변경

되었다. 6월 23일 헌법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국회의장인 이승만이 서명·공포하고 당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발효를 보게 되었다. 이에 앞서 6월 10일 국회법이 채택되어 의장 명의로 공포되었으며, 신헌법에 따라 정부조직법도 병행 및 제정되어 7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4년의 임기의 간접선거 형태이었으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실시되었다. 재적의원 198인 중 출석 의원 196명이 참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되었으며, 당시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무효 1표[서재필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므로 무효가 되었음]로 이승만 의장이 절대 다수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초대 부통령 선거는 출석의원 197명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제1차 투표 결과 이시영 113표, 김구 65표, 조만식 10표, 오세창 5표, 장택상 3표, 서상일 1표로서  $\frac{1}{3}$  이상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2차 투표가 시행되었으나 2차 투표에서도  $\frac{1}{3}$  이상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시영 133표, 김구 62표, 이귀수 1표, 무효 1표로서 이시영이 다수 득표로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게 되어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명한 이윤영에 대하여 국회가 인준을 거부하여 이법석을 재지명하여 인준을 받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정부를 구성하여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内外에 선포하였다.

제헌국회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을 1950년 4월 12일에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선거권을 만 21세 이상에 부여하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의 자유 신고제를 철폐하고 직권조사주의를 채택하였다. 선거제도는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하였다.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공영화를 꾀하였다. 또한, 선거소송을 단심제로 하였으며 선거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였다. 5·30 총선에는 5·10 선거 때 총선을 거부한 중도파들이 대거 참여하여 많은 이들이 당선되었으나 친이승만계는 소수였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남북협상파 및 중간계열서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우익진영이 방향을 전환한 가운데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 선거는 한국 정부가 처음 자주적으로 관리 및 집행하는 선거로서 그 의의가 매우 컸다. 제2대 국회의원에 재선된 자는 모두 31인이었으며, 그중 여성은 10인의 입후보자 중 2인이 당선되어 제헌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현저한 국회로의 진출을 보인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적 선거상황 및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lt;표 4&gt; 제2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단체별 상황

정당 단체별	입후보자수	비율(%)	당선자수	당선 비율(%)	득표수	득표 비율(%)
무소속	1,513	68.5	126	60.0	4,397,287	62.8
대한국민당	165	7.5	24	11.4	677,173	9.7
민주국민당	154	7.0	24	11.4	683,910	9.8
국민회	115	5.2	14	6.7	473,153	6.7
대한청년단	60	2.7	10	4.8	227,537	3.3
대한노동총연맹	41	1.9	3	1.4	117,939	1.7
사회당	28	1.3	2	1.0	84,418	1.3
대한노동당	20	0.9	-	-	45,813	0.7
일민구락부	19	0.9	3	1.4	71,239	1.0
한국독립당	13	0.6	-	-	17,745	0.3
민족자주연맹	10	0.5	1	0.5	33,464	0.5
기타(10명 미만)	71	3.0	3	1.5	152,365	2.2
총 계	2,209	100	210	100	6,982,043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울진군이 속해 있던 강원도는 12개의 선거구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있었다. 이때 79명의 입후보자 중 울진군에서는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선거 결과, 울진군에서는 제헌의원이었던 김광준 의원이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울진군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lt;표 5&gt; 울진군 제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소속 정당명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한청	강상술 (姜相述)	46	울진군 평해면 평해리	의사	의전졸	의사	2,479	
무소속	주세중 (朱世中)	30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산 6의8	농업	봉천농대졸	기정(技正)	4,699	
무소속	전영직 (田永稷)	63	울진군 울진면 죽변리	농업	한학수료	민족운동	9,331	
무소속	김준기 (金俊基)	37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공업	소졸	회사사장	1,949	
무소속	김광준 (金光浚)	36	부산시 보수동 1가 56	국회의원	일본중앙대졸	고문합격, 춘천경찰서, 국회의원	15,697	당선
무소속	진기배 (陳基培)	30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51	회사원	복경대 청강생	청년운동	4,11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김광준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운동규제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과 ‘국무원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등 결의안 제안, ‘군수사기관의 수사방법시정에 관한 건의안’ 등을 제안하였다.

5·30 선거 결과 2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2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국회는 서울사수를 결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대통령은 미리 피신하였기에 정부 또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여 비상계엄하의 통치를 이어갔다. 이에 1951년 5월 14일 부통령 이시영이 대통령의 독주와 비정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5월 16일, 국회는 김성수를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제2대 부통령선거는 한국전쟁 중에 생긴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양민학살 사건’ 등으로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이 심화되며, 국정에서 소외되었던 이시영 부통령이 1951년 5월 9일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하여 사퇴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1951년 3월 4일 제출된 교섭단체 등록에 의한 당시 의회의 정치적 세력분포는 여당 격인 신정동지회 70명, 야당인 민주국민당 40명, 그리고 무소속의원 공화구락부가 40명이었다. 5월 16일에 실시된 제2대 부통령선거에서 신정동지회는 여당 대표로 이갑성을, 야당인 민주국민당과 공화구락부는 공동으로 김성수를 지지하였다. 재적의원 210인 중 출석의원 151인이 참석하여 투표 한 결과, 김성수 66표, 이갑성 53표, 함시영 17표, 장택상 11표, 지청천 2표, 김창숙 1표, 무효 1표였다. 그러나 % 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실시된 2차 투표에서도 김성수 68표, 이갑성 65표, 함시영 10표, 장택상 5표, 지청천 2표, 김창숙 1표로 집계되었고 이는 % 이상의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결선투표는 152명의 출석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최고 득표자인 김성수, 이갑성 두 사람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김성수 78표, 이갑성 73표, 무효 1표로 김성수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간접선거로는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다. 1951년 11월 6일, 허정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고 11월 30일, 정·부통령을 직선하고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12월 23일, 자유당을 창당하고 그 총재가 된다. 이 직선제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163명 중 가 19, 부 143, 기권 1로 부결처리 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야당이 1952년 4월 17일 국회의원 123명의 찬성으로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는 1952년 7월 23일까지였으나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으로 인하여 대통령선출이 지연되던 중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부 제출 개헌안과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의회 제출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을 추진하였다. 결국, 본 개헌안이 1952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어 7월 18일, 정·부통령선거법이 법률 247호로 공포되었으며, 8월 5일이 선거일로 지정 공고되었다.

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1,448개 면 중 1,308개의 면에서 선거가 실시되

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당해 구역의 인구수 13,464,032명의 42%에 해당하는 5,689,917명이었으며, 투표 자수는 선거인 총수의 93%에 해당하는 5,259,462명이었고, 유효 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98%에 해당하는 5,171,720표이었다.

시·읍·면의회의원선거의 특징을 보면,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인의 등재율이 높지 않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유동과 군 복무로 인한 부재자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같은 비율을 보이며 투표자는 시보다는 읍이, 읍보다는 면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시골로 갈수록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인지도, 밀집도가 높고 문중 간의 경쟁의 식이 높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당선자는 무소속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의회에 있어 야당의 진출은 미미하였다. 초대 울진군 면의회의원 및 면장선거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lt;표 6&gt; 초대 울진군 면의회의원 명단

지역	의장	부의장	의원 명단
울진면	강석진	이상우	최진홍, 김진옥, 임필용, 김재만, 이상봉, 전무호, 오종석, 장문규, 윤병황, 남광열, 이영우, 최만유, 장보균
북면	박일봉	엄재학	장형석, 전광현, 남영우, 김진권, 장현규, 반진철, 최근희, 고동수, 전덕중, 조년수(무원)
서면	심능찬	전덕중	방경청, 백일진, 김봉학, 안병두, 강대석, 이학출, 김명학, 용하진, 장동익
근남면	진기혁	황석필	윤석우, 김재하, 장성업, 장수원, 임순화, 노만석, 이규탁, 홍영국, 장일만
원남면	최연구	임성한	남택우, 도주건, 장상호, 신수봉, 윤병연, 박재술, 강대현, 김우홍, 김용구
기성면	최용순	안세원	이만우, 김용식, 김천수, 이재준, 이정길, 안수윤, 김두선, 황규석, 임수근
평해면	방주학	서근이	이규석, 김성환, 최덕산, 김형석, 지천일, 김석대, 손명연, 이수봉, 김이두, 전복운
온정면	강상훈	권세환	손봉석, 이기수, 손순발, 남일용, 김형식, 황국문, 엄만수, 전종환, 김명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7&gt; 초대 울진군 각 면장(선출직) 명단

구분	주소	성명	소속	재임기간	경력	비고
울진면	울진면 읍내리	이상태	자유당		중졸, 어업조합 3년	
북면	북면 신화리	장형석	자유당		공무원	
서면	서면 삼근리	사창업	자유당		소졸, 면장 3년	
근남면	근남면 행곡리	권상웅	자유당		중졸, 교원 7년	
원남면	원남면 갈면리	장상진	자유당		소졸	
기성면	기성면 척산리	안육원	자유당		소졸, 산림주사 면서기	

구분	주소	성명	소속	재임기간	경력	비고
평해면	평해면 금음리	김태원	무소속		소졸, 우체국, 어업조합	
온정면	온정면 조금리	이태신	자유당		소졸, 교원, 경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52년 5월 10일의 도의회의원선거는 서울특별시와 9개 도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를 제외한 7개의 도에서 실시되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당해구역의 인구수 14,836,791명의 43%에 해당하는 6,358,388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선거인총수의 81%에 해당하는 5,165,266명이었고, 유효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97%에 해당하는 5,013,524표이었다.

도의회의원선거의 특징을 보면, 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1952년 4월 25일 읍·면의회의원선거 때보다 저조하였다. 시의회의원선거와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집권당인 자유당이 다수 진출하였고 야당은 극히 미미한 결과를 보였다. 당시 울진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상당지역에서 전쟁 중이었던 관계로 법에 따라 도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초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 8개월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원·내외로 분파된 자유당 세력의 통합을 모색하는 동시에 민주국민당을 위시한 반정부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1951년 11월 30일 정부안으로 정·부통령을 직선하고 국회의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진출하였다. 이는 이면에 야당인 민주국민당이 득세하여 약화 일로에 있는 여당으로서 야당 측을 제압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점차로 신임을 상실해 가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간접선거제인 현 제도로 장래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헌안이 표결되던 당시 원내 세력분포는 여당인 자유당원 93명, 야당인 민주당원 39명, 민우회 25명, 무소속 18명이었으나 원외파 자유당에 참여하는 소수의 인물 외에는 절대적 다수가 야당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163인 중 가 19, 부 143, 기원 1로 부결되었다.

개헌에 실패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원외지구당 지지자, 그리고 국민회와 대한청년단 등을 중심으로 한 산하 각 단체에서는 6월에 실시될 대통령 간접선거가 긴박하게 될 예정이었으므로 각 지방의 조직체에 지령하여 개헌안 부결을 반대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민의를 배반한 국민대표를 소환한다는 의도로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전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2월 19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결사 항쟁한다는 서약을 하며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처럼 개헌안을 위한 여야 간의 대립격화와 자유당 내 양파 간의 대립이 결국 국회와 정부 간의 정면충돌을 초래하여 양자 간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자 국회와 정부는 각기 별개의 개헌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원내에서는 민주국민당, 원내자유당의 간부파의원들이 결합하여 내각책임제의 개헌안 작성과 서명 공작을 진행하여 4월 17일에는 광상훈 의원 외 122인의 연서로써 내각책임제개

헌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원외 자유당을 비롯한 18개 단체의 대표들은 내각책임제개헌안반대 전국정당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 부결된 것과 같은 내용의 정·부통령직선제, 그리고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5월 14일 다시 제출하였다.

원외에서는 5월 15일경부터 연달아 민족자결단, 백골단, 땃벌대 등의 폭력단이 국회의원 소환과 국회해산을 외치며 부산의 거리를 배회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하여 소란을 부리는가 하면 신의희 국회의장의 집을 포위하며 위협까지 하였다. 5월 25일에는 경남 및 전라남 북도 일대에 잔여 공비소탕이라는 명목의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국회 의결로 석방되었던 내각책임제 개헌추진파인 서민호 의원[무소속]을 재구속하였다. 이어 26일에는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탄 버스가 국제공산당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헌병대에 연행되었다. 그리고 부산 시내의 국제구락부에서는 이시영, 김성수, 장면, 조병옥, 김창숙, 신흥우, 백남훈, 서상일 등 60인 이상의 재야정치 지도자들이 합동하여 야당을 지지하고 헌법수호를 외치며 반독재호헌 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어 선언대회를 개최하려는 찰나 괴한들의 습격으로 동 대회는 제지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6월 12일에는 민우회와 자유당 잔류파의 40여 인으로 결합한 신라회가 중심이 되어 제3의 개헌안이 자유당의 합동파인 삼우장파와의 타협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제출한 개헌안을 발췌 및 종합하여 정·부통령의 직접선거제와 양원제의 채택,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과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 인정 등의 4개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제3의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한편, 6월 30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8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폭도들에 의하여 의사당 내에 강제로 감금되었다. 며칠 동안 감금상태에 처했던 의원들은 결국 7월 4일 밤 9시에 정부 측의 직선제 개헌과 야당 측의 국무원불신임제가 결충된 발췌개헌안을 재적 183인 중 166인이 출석하여 기립투표로 통과[기권 3표]시켰고 정부는 7월 7일 제1차 개정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발췌개헌은 그것이 공고의 절차를 위반한 개헌이자 국회의원의 토론 자유 없이 강행된 것으로 투표의 자유에 하자가 있는 위헌적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혈 쿠데타에 의한 이 헌법 개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자유당은 같은 해 7월 19일 대전에서 소집된 임시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을 이의 없이 지명하였으나, 부통령후보 지명전에 들어가 중앙 및 지방의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내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족청계 대 반족청계로 분파되어 폭력 행사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족청계의 승리로 귀결되어 이범석이 부통령후보에 지명되었다.

개정헌법에 따라 정부는 1952년 8월 5일을 선거일로 결정 및 공포했으며,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입후보자는 자유당의 이승만, 무소속의 이시영, 조봉암, 신흥우 등 모두 4인이었다. 제2대 대통령선거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적을 제거하고 막강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으며 그저, 차점자와의 표차만이 관심사였다.

제2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는 1949년 5월 1일에 조사된 인구수 20,178,641명의 40.9%에 해당하는 8,259,428명이었고, 투표수는 선거인 총수의 88.1%에 해당하는 7,275,883명이었으며, 유효 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96.5%에 해당하는 7,020,684표이었다. 후보자별 득표에 있어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유효 투표 7,020,684표의 74.6%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다수표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52년 8월 5일에 실시한 제3대 부통령선거의 입후보자는 대한노총의 전진한, 자유당 합당파의 정기원, 이갑성, 임영신, 원외 자유당의 백성욱과 무소속 함태영 후보가 있었다.

그러나 본래 자유당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범석을 지명하여 선거에 임하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은 무소속 입후보자인 함태영을 지지하게 되어 사실상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함태영으로 그 후보자가 변경된 셈이었다.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시행하였으므로 선거에 관한 구역과 선거인 수 등에 있어서 대통령선거와 다름이 없었다. 선거 결과, 자유당의 이범석이 낙선하고 이승만의 내적 지지를 받고 있던 무소속 함태영이 장택상 총리가 거느린 경찰 및 행정조직의 도움으로 유효 투표 7,133,297표의 41.3%인 2,943,813표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2대 대통령선거 및 제3대 부통령선거의 전국적 상황 및 강원도와 울진군의 상황은 <표 8>,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표 8> 제2대 대통령 선거 투표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 자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8,259,428	7,020,684	255,199	7,275,883	983,545	88.1	96.5
강원	439,519	396,782	10,003	406,785	32,734	92.6	97.5
울진군	42,584	39,082	1,053	40,135	2,449	94.0	97.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9> 제2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계
	조봉암(曹奉岩)	이승만(李承晚)	이시영(李始榮)	신흥우(申興雨)	
전국	797,504	5,238,769	764,715	219,696	7,020,684
강원	10,516	366,583	13,378	6,305	396,782
울진군	1,300	35,958	1,193	631	39,08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10&gt; 제3대 부통령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유효	무효	계		
전국	8,259,428	7,133,297	137,585	7,270,882	988,546	88.0
강원	439,519	401,766	4,882	406,648	32,871	92.5
울진군	42,584	39,712	381	40,093	2,491	94.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11&gt; 제3대 부통령 선거 후보자별 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조선 민주당	무소속	자유당 합동파	민주 국민당	자유당 합동파	자유당	자유당 합동파	대한 로총	자유당	계
	이윤영 (李允榮)	함태영 (咸台永)	이갑성 (李甲成)	조병옥 (趙炳玉)	임영신 (任永信)	백성우 (白性郁)	정기원 (鄭基元)	전진한 (錢鎮漢)	이범석 (李範奭)	
전국	458,583	2,943,813	500,972	575,260	190,211	181,388	164,907	302,471	1,815,692	7,133,297
강원	11,555	223,534	9,427	5,962	4,424	2,811,	3,674	10,675	129,704	401,766
울진군	1,288	24,671	1,198	701	707	450	333	690	9,674	39,71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3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전쟁이 휴전하고 1년 뒤인 1954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이때 휴전협정의 결과 210선거구 중 휴전선 이북의 지역인 개성을 포함한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여당인 자유당은 조직의 강화를 위해 우리 선거사에서 처음으로 의원후보자공천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원내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도 이에 대항하여 의원후보자공천제를 실시하였다.

입후보 상황은 국회 의정 수 203명에 대하여 입후보자 수는 1,207명이었으며, 평균 5.9:1의 경쟁이었다. 정당 단체별 후보자의 상황으로는 무소속 후보자는 총 1,207명의 66%에 해당하는 79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이 여당인 자유당으로 공천후보자 181명, 비공천자 61명으로 모두 242명이었으며, 민주국민당의 공천후보자만 77명에 이르렀다. 여당인 자유당은 전 선거구의 89%에 해당하는 181개 구에 공천후보자를 추천하였고 여타 지역도 공천지구에 61명이 입후보하여 전 선거구에 입후보자를 가졌다.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도 수에 있어서 열세하였으나 전 선거구의 36%에 해당하는 77개 구에 공천후보자를 추천하여 처음으로 정당에 의한 여야대결의 선거전이 전개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의 전국적 상황은 아래 <표 12>, <표 13>과 같다.

&lt;표 12&gt; 제3대 국회의원 전국·강원 선거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유효	무효	계			
전국	8,446,509	7,492,308	206,082	7,698,390	748,119	91.1	97.3
강원	468,915	428,168	7,120	435,288	33,627	92.8	98.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13&gt; 제3대 국회의원 전국 정당별 선거상황

정당 단체별	입후보자 수	비율(%)	당선자수	당선비율(%)	득표수	득표비율(%)
무소속	797	66.0	67	33.0	3,591,617	47.9
자유당	242	20.1	114	56.1	2,756,061	36.8
민주국민당	77	6.4	15	7.4	593,499	7.9
국민회	48	4.0	3	1.5	192,109	2.6
대한국민당	15	1.2	3	1.5	72,925	1.0
기타(10명 미만)	27	2.3	1	0.5	286,097	3.8
총 계	1,206	100	203	100	7,492,308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본 선거에서 울진군에서는 현역 의원인 김광준 의원이 출마하였고 자유당 소속의 전만중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며,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만중 의원은 내무분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으며, 수복지구 행정인수 작업에 관여하였고, 주요 건의안으로 양곡 대책에 관한 건의안이 있었다.

&lt;표 14&gt; 제3대 국회의원선거 울진군 결과

소속 정당명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자유당	전만중 (田萬重)	4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82의5	농업	울진 제동학교졸	자유당군당 위원장	25,574	당선
무소속	김광준 (金光俊)	38	서울시 중구 회현동 100의 68	민의원 의원	일본 중앙대졸	제헌국회의원, 변호사	9,038	
무소속	진기배 (陳基培)	32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828	광업	북경대 청강생	청년운동	3,229	
무소속	이종만 (李鍾萬)	26	울진군 평해면 후포리 505	자유업	중졸	공무원 10년	-	사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이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연임제와 더불어 일부 헌법 조항의 국민투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1954년 9월 8일에 제출하였다. 이는 당시 김두한의원을 제외한 자유당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재옥 의원 등 총 136인의 서명과 날인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것이었다. 개헌안이 제출되자 야당은 거국적 반대 운동을 일으키며 자유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반대투표 권유 공작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자유당은 순무소속이나 무소속 동지회를 대상으로 한 찬성 투표 공작에 전력하였다.

개표 결과, 개헌안은 재적 203명[출석 202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frac{2}{3}$ 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부결이 결정되고 이를 뒤인 29일,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 이론을 도입하여 본회의에서 여야결투와 야당의 총 퇴장 하에 여당 의원의 참여만으로 형식상의 간단한 토론만으로 종결짓고 번복가결 동의를 얻는다. 이때 출석의원 125명 중 김두한, 민관식 양 의원을 제외한 123표로 가결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며, 이 개헌은 그 자체로써 절차상의 부당함과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 개헌이었다. 실질상으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무효의 개헌이었다.

1955년 9월 18일에는 민주당이 통합 야당으로 발족하였는데, 이처럼 자유당은 억지의 개헌 성공을 발판삼아 대통령 3선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1956년 3월 3일에 열린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을 각각 지명하였다. 이에 대치하여 민주당은 3월 28일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후보에 장면을 각각 지명하여 선거에 임하게 되었다. 이에 자유당 총재였던 이승만은 같은 날 이기붕을 정식 부통령후보로 승인함으로써 무소속으로는 조봉암이 출마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전이 종반전에 돌입할 무렵이던 5월 3일, 한강 백사장에 운집한 30만 군중에게 정견발표를 하고 호남지방 유세에 나섰던 신익희가 5일 새벽 5시 반경 놔출혈로 돌연 사망하였다. 결국, 이승만과 조봉암의 대결 구도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2배 이상의 득표로 쉽게 당선되었다.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 수는 1955년 9월 1일 현재로 조사한 인구수 21,526,374명의 44.6%에 해당하는 9,606,870명이었으며, 투표자 수는 선거인 총수의 94.4%에 해당하는 9,067,063명으로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1956년 5월 15일에는 제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4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자로 자유당에서 이기붕, 민주당에서 장면, 조선민주당에서 이윤영, 대한민국당에서 윤치영, 진보당에서 박기출, 무소속에서 이범석 등 8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도중 박기출, 이종태가 사퇴하여 실질적 경쟁은 6대 1이었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 신익희의 사망으로 선거의 관심은 부통령선거에 집중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대구 투표함 사수는 유명한 정치적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대세는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 후보의 당선으로 기울었고 5월 19일 오후, 장면은 유효 투표 8,642,494표의 46.4%에 해당하는 4,012,654표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에는 이승만 자유당 후보가, 부통령에는 장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당적을 달리하는 정·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었다. 이는 국민이 이승만의 정치적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발전에 진전을 이룬 사건이었다.

제4대 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으므로, 선거에 관한 구역 및 선거인 수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선거와 다름이 없었으며, 제3대 대통령선거 및 제4대 부통령선거 상황은 <표 15>, <표 16>, <표 17>, <표 18>과 같다.

&lt;표 15&gt; 제3대 대통령 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9,606,870	7,210,245	1,856,818	9,067,063	539,807	94.4	79.5
강원	804,325	709,963	79,710	789,673	14,652	98.2	89.9
울진군	41,396	39,182	2,045	41,227	169	99.6	95.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16&gt; 제3대 대통령선거 선거 후보자별 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계
	자유당		무소속	
	이승만(李承晚)	조봉암(曹奉岩)		
전국	5,046,437		2,163,808	7,210,245
강원	644,693		65,270	709,963
울진군	37,867		1,315	39,18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17&gt; 제4대 부통령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9,606,870	8,642,494	421,700	9,064,194	542,676	94.4
강원	804,325	763,132	26,110	789,242	15,083	98.1
울진군	41,396	40,950	306	41,256	140	99.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18&gt; 제4대 부통령선거 후보자별 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주당	자유당	국민당	조민당	무소속	무소속	
	장면 (張勉)	이기봉 (李起鵬)	윤치영 (尹致映)	이윤영 (李允榮)	백성욱 (白性郁)	이범석 (李範奭)	
전국	4,012,654	3,805,502	241,278	34,926	230,555	317,579	8,642,494
강원	103,493	611,704	14,046	3,225	7,052	23,612	763,132
울진군	3,883	36,338	244	31	277	177	40,95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56년 8월 8일 시·읍·면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전국 시·읍·면장선거는 기득권이 인정된 20개의 시, 46개의 읍, 845개의 면을 제외하고 실시되었으며, 위 선거의 전국적 상황은 <표 19>와 같다.

&lt;표 19&gt; 제2대 시·읍·면장 정당·단체별 당선 상황

구분	자유당	민주당	국민회	농민회	기타	무소속	당선자 총수	무투표
시장	2	-	-	-	-	4	6	0
읍장	8	1	1	-	-	20	30	3
면장	282	6	6	3	1	243	544	87
합계	292	7	7	3	1	267	580	9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이 선거에서 당선된 울진군의 면장으로는 울진면의 이상태(李相泰), 북면의 장형석(張亨錫), 서면의 김동환(金東煥), 근남면의 권상웅(權相雄), 원남면의 장상진(張尙鎮), 기성면의 안육동(安旭東), 평해면의 김태원(金泰原), 온정면의 이태신(李泰新)이었다. 1956년 8월 8일의 면의회의원선거 결과를 보면, 총후보자 수 24,712명 가운데 사망·사퇴자 수는 3,266명이었다. 당선자 수는 15,548명이었으며 무투표 당선자 수는 4,819명이었다. 제2대 울진군의 면의회의원 당선 상황은 <표 20>과 같다.

&lt;표 20&gt; 제2대 면의원 당선자 명단

지역	의장	부의장	의원 명단
울진면	김진옥	최진홍	김우동, 임필용, 김재만, 최해동, 장화영, 문제성, 주진옥, 권성복, 노대원, 장진택, 주식영
북면	최익성	반진철	전광현, 박종승, 박일봉, 장순갑,김장수, 홍순정, 전규식, 김광열, 김용진, 이준희
서면	사창업	방성숙	김호영, 방경청, 전명충, 권태형, 김종범, 이치일, 이중근, 장부근, 김연회
근남면	진기혁	권상웅	윤보현, 주병남, 김대영, 장필성, 김충달, 윤방좌, 홍준경, 임형식, 장일만, 장성업
원남면	김동진	장전강	윤횡연, 장상수, 장문백, 김복석, 이윤섭, 임성한, 남명숙, 지병원, 김종호, 장상진, 장윤신
기성면	최용순	임수근	임삼암, 황병수, 백석인, 장문학, 김두선, 김재련, 권백술, 이재준, 안수윤, 안용순, 최명원
평해면	안종현	이지송	서상국, 박창순, 손명수, 김성출, 김성수, 최복술, 권중용, 지하일, 김용구, 황단청, 신영학, 박상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56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금화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8개 군, 그리고 선거를 연기한 경기도 옹진군을 제외한 총 437개 선거구에서 도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울진군에서는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당선자는 울진면 읍내리의 주진철[1900. 2. 4. 생]과 평해면 후포리의 안종현[1909. 3. 9. 생]이었다.

제3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후,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던 중 여·야가 각각 별도로 제안한 개정 법률안이 양자 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두 법안의 상정 및 심의에 있어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여·야 대표들은 여러 번에 걸쳐 협의한 끝에 양 법안을 결충하여 단일안을 작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회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선거법안 여야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57년 9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80여 차례의 협상을 거듭한 끝에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의 두 협상 법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구속된 채 통과된 여·야 협상 선거법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공포 시기를 늦추어 오다가 1958년 1월 1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민의원을 통과하면서 정부는 1월 25일, 민·참 양 법안을 동시에 공포하였다. 이에 정계에서는 제4대 민의원 및 초대참의원의원선거를 앞두고 격심한 파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입후보자공천을 앞두고 숙당(肅黨) 열풍이 일어났으며, 민주당에서는 여당과 호응하여 협상 선거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당내의 혼란이 재발되었다. 또한, 이때 진보당이 혁신 세력을 포섭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국가보안법위반을 포함한 죄목으로 당 간부인 조봉암, 윤길중 등이 기소되고 같은 해 2월 25일 공보부에 의해 동당의 등록

이 취소되면서 선거전은 완전히 자유당 대 민주당인 양당 대결 구도로 전환되었다.

입후보자 등록은 민의원의원정수 233명에 대한 입후보자 수 841명으로, 평균 3.3 : 1의 경쟁이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을 위시한 14개의 정당과 단체가 참가하였으나 10인 이내의 후보자를 낸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10개뿐이었고 그중 1인밖에 후보자를 갖지 못한 정당과 사회단체가 5개로서 군소정당의 난립 현상은 제헌 국회의원선거와 제2대 국회 의원선거, 제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러서는 협상 선거법에서 여야가 의도했던 것과 같이 정당의 난립과 무소속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여 정당 정치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함으로써 유명 무실한 군소정당과 단체는 다소 정비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울진군에서는 현역인 전만중 의원이 자유당 공천을, 그리고 장화영 후보가 국민회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며, 초대·2대 의원을 지내었던 김광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위 선거에서의 울진군의 후보자와 득표에 관한 것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제4대 국회의원선거 울진군 결과

소속 정당명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특표수	비고
자유당	전만중 (田萬重)	49	서울시 종구 동자동 19의 62	민의원	울진제동 학교졸	자유당울진군당 부위원장, 민의원의원	23,166	당선
국민회	장화영 (張華永)	58	울진군 울진면 봉평리 831	한약종상	울진보통 학교 중퇴	면의원, 국민회 울진군부회장	3,139	
무소속	김광준 (金光俊)	42	서울시 종구 회현동	변호사	日中앙 대법과졸	제헌국회의원	12,33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전만중 의원은 내무분과위원회간사 및 국정감사반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사라호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사라호 태풍으로 떠내려간 울진 남대천의 울진교 복구 예산을 조기 확보하였으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이 선거에서 출향인사로는 강릉시에서 무소속으로 평해 출신의 김명윤 변호사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출마하였으나 형인 김광준 전 의원과 함께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33명의 의원 중 자유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24일, 자유당은 신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 등을 반대파의원들을 지하실에 가두어 놓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를 강행한다. 이를 이른바 2·4 보안법 파동이라 한다. 이로써 이들은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59년 5월 1일에는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는 등, 정치적 자유 말살과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1956년 정·부통령이 여야로 나뉘어 국정운영에 차질이 컸음을 통감한 자유당은 1960년 선거에서만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정·부통령 동일정당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유당 의원들이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양해를 얻지 못하여 주도권을 민주당에 돌리며 막후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헌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잡음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민주당 중앙 상위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결의함으로써 개헌 추진은 장벽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자유당은 2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이 표명한 4선 출마 의사를 지지하는 한편 6월 29일에는 서울 시내 대한극장에서 전국대의원 1,008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9차 전당대회 겸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총재, 부통령후보에 이기붕 중앙위의장을 지명하였다.

1960년 정·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1959년 하반기에 이르자 자유당은 같은 해 8월 경부터 야기된 민주당의 신·구파 간의 당 주도권 쟁탈전을 최대한 이용하여 민주당 소속의 원의 흡수 공작을 추진하는 한편 그 내분이 아물기 이전에 선거를 벌이기 위하여 조기 선거를 기도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당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을 통한 선거 운동망을 조직하고 전국의 경찰들로 하여금 이를 감시 및 감찰토록 하였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었던 민주당은 여당인 자유당과는 달리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신·구파 사이에 격렬한 쟁탈전을 벌였다. 양파 간의 분규는 지명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어 자칫하여 당을 양분해 버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올 정도로 격렬히 대립하였다. 그러나 결국 신·구파 간의 협상과 개인접촉 등을 통해 중앙 상위가 10월 지명대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1959년 9월에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신·구파 간의 파쟁이 폭력화로 번져 무기 연기되었다. 또한, 당내 분규를 혐오한 곽상훈, 박순천 양 최고위원은 10월에 최고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어 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 구파의 영수인 조병옥마저 대통령 후보 포기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내분으로 당초 10월 지명대회마저 연기하게 되었고 결국 11월 전당대회에서 실력대결을 벌인 끝에 구파의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신파의 장면이 부통령후보와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1월 말에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에 자유당은 선거 시기를 예상보다 2월 앞당긴 3월 15일에 실시할 것을 2월 3일에 결정 및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선거 전략으로써 정책반영으로는 민심을 끌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행정부와 여당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는 것에 그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2·4 파동, 경향신문 폐간과 금융독지사건 등을 국민에 폭로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제4대 대통령 직접선거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조병옥이 입후보하여 처음으로 여야정당의 단일 대결전이 예상되었으나 선거운동 중인 2월 15일,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사망으로 자유당의 이승만이 단일후보가 되어 그의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로 되어있었다. 그

리고 3·15선거는 사실상 대통령직의 계승권을 가진 부통령선거에 집중되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자유당 정부는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모든 집회가 사전신고, 사전허가제로 되어있음을 악용하여 야당 측의 선거 집회를 거의 모두 원천봉쇄하였다. 또한, 여당 측의 선거 집회에는 군중을 도모하였다.

제4대 대통령 직접선거에 있어 선거인 수는 1955년 9월 1일 현재로 조사한 인구수 21,526,374명의 52.0%에 해당하는 11,196,490명이었으며, 투표자 수는 선거인 총수의 97%에 해당하는 10,862,272명이었다. 이때 유효 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88.7%에 해당하는 9,633,376표이었으나 이 선거는 4·19혁명 이후 소집된 4월 26일 국회 결의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같은 날 실시한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통일당의 김준연,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등 4인이 입후보하였다. 이를 입후보자는 민주당의 장면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당 대통령 후보인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였다. 투표자 수는 선거인 총수의 97.0%에 해당하는 10,861,573명이었고, 유효 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96.9%에 해당하는 10,527,445표이었으며, 자유당의 이기붕이 유효 투표 총수의 79%에 해당하는 8,337,059표를 얻음으로써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 선거는 앞의 대통령선거와 같이 무효가 되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이었으며 이를 규탄하는 4·19혁명이 일어나는 시발점이었다. 결국,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내각책임제로 개헌하고 해산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치러진 3·15선거의 선거 결과는 아래 <표 22>, <표 23>, <표 24>, <표 25>와 같다.

<표 22> 제4대 대통령 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1,196,490	9,633,376	1,228,896	10,862,272	334,218	97.0	88.7
강원	881,698	829,131	44,665	873,796	7,902	99.1	94.9
울진군	46,278	45,123	546	45,669	609	98.7	98.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23&gt; 제4대 대통령선거 선거 후보자별 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계
	자유당	민주당		
	이승만(李承晚)	조병옥(趙炳玉) (사망)		
전국	9,633,376	-		9,633,376
강원	829,131	-		829,131
울진군	45,123	-		45,12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24&gt; 제5대 부통령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11,196,490	10,527,445	334,128	10,861,573	334,917	97.0
강원	881,698	858,349	15,246	873,595	8,103	99.1
울진군	46,278	45,565	108	45,673	605	98.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25&gt; 제5대 부통령선거 후보자별 후보자별 상황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계
	자유당	통일당	대한여자국민당	민주당		
	이기붕(李起鵬)	김준연(金俊淵)	임영신(任永信)	장면(張勉)		
전국	8,337,059	249,095	97,533	1,843,758		10,527,445
강원	786,595	5,468	1,543	64,743		858,349
울진군	42,587	592	15	2,371		45,56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유례없는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전국민적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진행되던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최루탄이 눈에 박혀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4월 19일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3·15부정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데모를 하였고, 정부가 발포로써 대응함에 따라 시위는 혁명으로 진전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시민들은 더욱 분개하였다. 이에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총재를 사임하고 이기붕이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

았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4월 26일, 개헌과 총 선거로 현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5월 2일,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며 장장 12년에 걸친 이승만의 독재와 그의 자유당 정부가 봉괴하였다. 한편 국회는 4월 22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19혁명이 발발한 지 1주일만인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만장일치로 가결함과 동시에 3·15 정·부통령선거의 무효와 재선거의 실시, 과도내각 하에서 완전한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단행할 것과 개헌 직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제2절 제2공화국

4·19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발생한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이승만 정부의 수석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과도정부의 과업은 내각책임제개헌의 실현과 개정에 뒤따르는 총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처음부터 제한된 임무에 국한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봉괴한 후, 구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1인 독재의 재출현 방지를 위하여 내각이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국회는 4월 28일 본회의 결의에 따라 내각책임제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5월 5일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빙하여 국회의사당에서 개헌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여론을 들었으며, 5월 11일 개헌안이 정헌주의원 외 174인의 명의로 제안되어 그날로 공고되었다.

영국식 정부 형태를 모방하고 민권을 대폭 신장한 위 개정안은 6월 15일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당일로 이 개정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개정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내각책임제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채택, 중앙선거위원회의 독립 기관화, 경찰의 중립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채택 등, 민주정치의 재건과 정치적 자유의 전면적 회복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은 것이었다. 개헌 후 선거의 원칙이 정해지자 곧 민·참 양원 의원의 선거를 전제로 국회의원선거법안이 6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2일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23일에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였다.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국회의원선거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참의원의원선거법을 폐기하였으며 위 선거법의 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거연령을 20세로 낮추고 참의원 의원과 피선거권을 35세에서 30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민의원의원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 종전 방식에 따르고 참의원의원선거는 서울특별시, 도를 단위로 하여 1선거구에서 2인 또는 8인을